

문서번호	시설안전팀-707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7.02.06
공개여부	공개

★담당자	팀장직무대리	건설안전본부장 02/06
김두영	김주호	김승호
협 조	팀장 차장	김진중 임계근
감 사		

## 가락몰 판매동 지하층 보행자 안전사고 조치 결과 보고

2017. 2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시설안전팀

가락물 판매동 지하1층

## 보행자 안전사고 조치 결과 보고

가락물 판매동 지하1층 G-core에서 보행중 장애인 경사로에 올라서다 미끄러지며 넘어져 부상을 당한 사고에 대한 보험사 처리 완료(합의 완료)에 따른 결과 보고임.

### I

#### 현황

- 일 시 : 2016년 8월 26일 (금) 13:00 경
- 장 소 :가락물 판매동 지하1층(G-core) 장애인용 경사로
- 사고원인 : 판매동 지하1층에서 청과직판 매장으로 이동 중 장애인용 경사로를 올라서다 물기로 인해 미끄러지며 넘어져 부상을 당한 사고임

### II

#### 피해상황 및 조치사항

- 피해자 합의 금액 : 4,300,000원(자기부담금 100,000원 포함)

● 자기부담금(공사 부담) 100,000원은 피해자 계좌에 직접 입금

#### 피해 현황

- 피 해 자 : 김정순(010-XXXX-XXXX, 가락물 판매장 청과물 구매 고객)
- 피해정도 : 우측 어깨부상(골절·탈골) 및 치아 흔들림 현상

## ■ 피해자 치료 현황

- 2016.08.26 : 경찰병원(119 후송)
- 2016.08.26 ~ 2017.01.17 : 혜민병원(입원 및 통원 치료)
- 2016.10.20 ~ 2017.01.16 : 우신정형외과(통원 치료)
- 2016.11.07 ~ 2017.01.16 : 국중련한의원(통원 치료)

## ■ 보험사 조치현황

- 보험사 : NH농협손해보험
- 손해사정 담당 : 세계손해사정(주) 장지호(010-XXXX-XXXX)
- 손해사정인 조치현황 : 피해자 면담(4회) 및 보상금 합의 완료(2017.2.1)

## III

###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 피해 보상 총괄 및 보상 진행 : 시설안전팀

- 피해보상 금액 확정(보험회사 손해사정인 산정)에 따른 보상 실시
  - 합의금 4,300,000원 중 자기부담금 100,000원 보상 실시
  - 입금계좌 : 한국스탠다드차타드 / 159-20-246280 / 김정순

#### ■ 피해 보상에 따른 자기부담금(100천원/사고건) 예산 사용 : 재무팀 협조

- 예산과목 : 보험료[사업비용/영업비용/판매비와관리비/보험료]-재무팀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배정액	기집행액	금번집행액	예산잔액
보험료(재무팀)	302,780	151,390	100	100	302,580

- 붙임 : 1. 사고처리 과정표(보험사) 1부.  
2. 보험금 지급 안내서 1부.  
3. 합의서 1부. 끝.

# [붙임#1]

## ■ 사고처리 과정표

### 1. 일반 사항

보 험 종 목	재산종합보험	사 고 일 시	2016년 08월 26일
계 약 자 명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보험회사담당자	이 용 계장님
조 사 자	장 지 호	사 고 번 호	201608-0021835

### 2. 처 리 과 정

처 리 일 자	처 리 항 목	처 리 내 용
2016. 08. 26.	NH농협손해보험	- 수임
2016. 08. 30.	피보험자, 피해자	- 수임안내, 면담일정협의 - 피해자는 08월 31일 면담가능
2016. 08. 30.	피해자, 피보험자 면담	- 사고내용조사, 사고현장 확인 - 과실적용 등 보상내용 설명 - 향후진행과정설명
2016. 09. 02.	NH농협손해보험	- 현장조사보고서 제출
2016. 09 . 09.	피해자	- 진단서 접수
2016. 10. 17.	피해자	- 내일 병원방문, 현재 어깨통증이 심하고 치아는 3개월 경과를 지켜 보자고 하였다 함. - 치과진단서 제출 요구
2016. 11. 04.	피해자 면담	- 어깨통증 상태 여전하다 함. - 향후치료비 등 설명 종결유도 - 11월 15일 진료 후 보자고 함.
2016. 11. 16.	피해자	- 11월 15일 정밀검사를 받았으며, 어깨에 통증이 심해 치료를 더 받 겠다 함.
2017. 01. 13.	피해자	-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치료비 가지급 요구
2017. 01. 16.	피해자 면담	- 상태확인, 진료비영수증 등 제출요 구 및 종결협의
2017. 01. 16.	피보험자	- 피해자 상태 설명
2017. 01. 19.	피해자 면담	- 치료비영수증 등 서류접수
2017. 01. 26.	피해자 면담	- 보험금청구 관련서류 접수
2017. 02. 01.	피보험자 면담	- 보험금청구 관련서류 접수

상기와 같이 의뢰받은 사고에 대하여 처리되었음을 확인하고 사고처리 과정표를 제출합니다. [끝]



**보험금 지급 안내**

고객님이 청구하신 보험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됨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계약자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피보험자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접수번호	201608-0021835	사고일자	2016. 08. 26.
손해사정 법 인	사건조사경무	담당자	장기호
		연락처	010-224-0122
지급내역	취소료, 차등비, 동원비용 등 손해비용 전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감액사유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면책사유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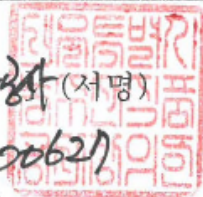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향후 보험금 지급일 등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에 대한 설명을 받았으며 금번 사고와 관련 어떠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자/피보험자/피해자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서명) ]

215-82-00621

대표 박희준



[붙임#3]

## 합 의 서

### I. 당사자

당 사 자	“갑”	“을”
성 명 ( 상 호 )	김 정 순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주민(사업자)등록번호	440311- 2480416	215-82-00627
주 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99 (잠실동, 잠실엘스) 157-401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 II. 사고의 내용

사 고 일 시	2016년 08월 26일, 13:00경
사 고 장 소	가락물 판매동 지하1층 장애인용 통로
사 고 내 용	상기일시 경 야채코너방향으로 이동 중 장애인용 통로로 올라서다 물기로 인해 미끄러지며 넘어져 부상을 당한 사고

### III. 합의내용

“갑”과 “을”은 명백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상기 사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하며, 아래의 합의는 “을”의 보험자인 “NH손해보험”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1. “을”은 “갑”에게 상기 사고와 관련하여 위자료, 치료비, 향후치료비, 통원비용 등 “갑”에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게 될 일체의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① 합 의 금 액 : 금 사백삼십만 원 (₩4,300,000)
- ② 지 급 방 법 : “갑”이 지정하는 아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다.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김 정 순	한국신협은행	159-20-246280

※ 상기 금원 중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100,000은 피보험자가 “갑”에게 직접 입금하고, 나머지 ₩4,200,000은 “을”의 보험자인 “NH손해보험”이 “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

2. “갑”은 “을” 또는 “NH손해보험”에게 1항에 기재된 금액 이외에 추가 금액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발생원인을 불문하고 “을” 또는 “NH손해보험”에게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3. “갑”은 “갑” 이외에 다른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이와 다른 사항이 있을 시 “갑”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2017. . .

“갑”: 김 정 순 (인)

“을”: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인)  
215-82-00627  
대표 박권중

